

# 소프트테니스 경기 대회 운영 규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테니스 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해 운영 규칙을 정하는 데 있다.

대회의 주최 단체 또는 주최 단체로부터 대회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관 조직(이하 대회 주최·주관 단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본 규정에 의해 대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조(대회 요강) 대회 주최·주관 단체로 대회 요강을 작성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대회 요강에 기재할 항목은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 1) 대회 명칭
- 2) 주최 단체명
- 3) 주관 단체명
- 4) 협력, 공동주최, 후원 및 협찬 단체명
- 5) 대회 기간
- 6) 개 최 지
- 7) 경 기 장
- 8) 경기 종목
- 9) 경기 일정
- 10) 참가 자격
- 11) 엔트리 방법(선수 변경 포함)
- 12) 경기 규칙 및 부수 규정
- 13) 경기 또는 순위 결정 방법
- 14) 조 편성
- 15) 참가 조건
- 16) 사용구 등
- 17) 도 핑
- 18) 의 무
- 19) 안전 관리
- 20) 시 상
- 21) 선수단의 비용
- 22) 회 의

## 제 2 장 경기 시설

제3조(경기 시설) 경기 시설은 원칙으로 다음과 같다.

① 경기 시설은 원칙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소프트테니스 코트 및 시설, 설비(웬스, 벤치, 스코아 보드, 관객석, 화장실, 선수 대기실, 탈의실, 경기 임원석, 내빈석, 보도석, 의무실, 롤라, 코트-부러쉬, 라인기, 계양 탑, 샤워, 음료 탱크 등)가 있어야 한다.

② 소프트테니스 코트 내 1면은 메인 코트로 한다. 메인 코트는 타 소프트테니스 코트로

부터 독립하여 관객석이 있는 것이 좋다.

③ 소프트테니스 코트는 아웃도어 또는 인 도어로 코트의 표면은 아웃 도어는 크레이, 모래 낄은 인조잔디 전천후 케미칼, 인 도어는 목판, 경질라바, 케미칼 등으로 하고 대회 요강 내 그 종류를 명기한다.

④ 코트 면 수는 대회 규모에 의해 다르나 예정된 일정에 충분히 시합이 소화될 수 있는 면 수로 한다.

⑤ 벤치는 플레이에 지장이 없는 곳(아웃 코트)에 설치한다.

### 제 3 장 경기 대회

제4조(경기 종목) 경기 실시 종목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에 의해 결정되고 대회 요강에 명기한다.

- ① 개인전 남·녀 복식
- ② 개인전 남·녀 단식
- ③ 개인전 혼합 복식
- ④ 단체전 남·녀

제5조(경기 일정) 경기 일정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제6조(참가 자격) 참가 자격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제7조(엔트리) ① 엔트리 방법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② 엔트리의 마감일 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회 주최·주관 단체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가 있다.

이때 대회 주최, 주관 단체는 대회 요강에서 명기할 필요가 있다.

제8조(경기 규칙의 특례) 대회는 원칙으로 소프트테니스 경기 규칙 및 소프트테니스 심판 규칙 즉 본 규칙에 의해 행하여지는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대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때에는 대회 주최, 주관 단체는 그 내용을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① 경기 규칙, 심판 규칙, 경기 대회 운영 규칙에 관하여 각국 연맹의 정해진 국내 규칙(모든 로컬 규칙)이 있을 때 국내 대회 등에서 국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단체전에 있어 1개 팀에 1명의 코치(감독)을 둘 수 있다. 이때 코치(감독)은 팀의 플레이어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③ 단체전에 있어서는 팀 멤버는 소프트테니스 코트의 정해진 장소에 들어가 소프트테니스 경기 규칙이 인정되는 조건의 범위 내에 있어서 매치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에 대해 조언 또는 신체상의 수발을 할 수 있다.

제9조(경기 방법)

(1) 경기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에 명시한다.

① 토너먼트전 방식

- 승자가 남는 방법을 하여 이겨 남은 자, 승자를 우승자로 하고 이하 승자 순위를 결정한다.

② 리그전 방식

- 모든 조가 서로 대전하여 별도 정하는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 토너먼트 방식과 리그전의 방식의 혼용 방식

- 참가자 규모의 상황에 의해 양 방식의 조 편성을 할 수 있다.

(2) 단체전의 대전은 다음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① 토너먼트 방식, 리그전의 방식에 있어서도 제출된 오다 순의 기수의 플레이어 서로에 의해 대전을 하고 승수가 많은 팀을 승자로 한다. 이때 대전은 단식 또는 복식 또는 단식, 복식의 조 편성에 의해 실시하고 원칙으로 모든 대전을 실시한다.

단, 대회 주최자의 결정에 의해 과반의 대전을 선취한 팀을 승자로 할 수 있다.

② 멤버에 결함이 있을 때 대전의 과반이 구성되면 레프리 및 경기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전이 가능하다. 단, 오다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1번부터 출장하지 않으면 안되고 결원은 대전에서 순차 기권으로 한다.

(3) 매치의 게임 수는 대회 주최, 주관 단체가 결정하여 대회 요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지시킨다.

#### 제10조(리그전의 승패)

리그전을 했을 때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이자(二者)동률일 경우는 대전의 승자를 우위로 한다.

② 동률자가 3자 이상일 경우는 동률자 상호간의 성적을 비교하여 승률이 높은 순위로 결정한다.

③ '①', '②'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동률자 상호간의 비교로,

-제 1로 득실 게임의 차가 큰 조(자)를,

-제 2로 득실 포인트의 차가 큰 조(자)를 우위로 한다.

-제 3으로 합계 포인트 수의 차가 큰 팀을 우위로 한다.

④ '①', '②', '③' 에 의해서도 순위 결정이 안될 경우 대회 주최, 주관 단체는 추첨 등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제11조(리그전에서의 기권처리 방법) 리그전에서 대전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플레이어 또는 조가 기권했을 때 대회 주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대회 주최, 주관 단체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① 단체전에 있어서 팀의 대전을 구성하는 반수 이상 출전하지 않을 때 이후 경기를 치를 수 없을 때, 처음 게임부터 0패 한 것으로 처리한다.

단, 심판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기권이 되었을 때에는 그 때까지의 결과는 유효로 한다.

② 단체전에 있어 팀의 대전을 정하는 반수 미만이 출전하지 않을 때 레프리 및 경기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시험을 속행할 수 있다.

이때 매치를 할 수 없었던 대전은 0패한 것으로 한다.

③ 개인전에 있어 전 경기를 끝내기 전에 이후 매치를 할 수 없을 때는 처음부터 0패한 것으로 한다. 단, 심판 규칙 18조의 규정에 의해 기권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성적은 유효로 한다.

④ 개인전에 있어 도중에 일시 매치를 할 수 없다가 후에 부활할 수 있게 된 때는 레프리 또는 경기 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 할 수 없었던 매치는 0패한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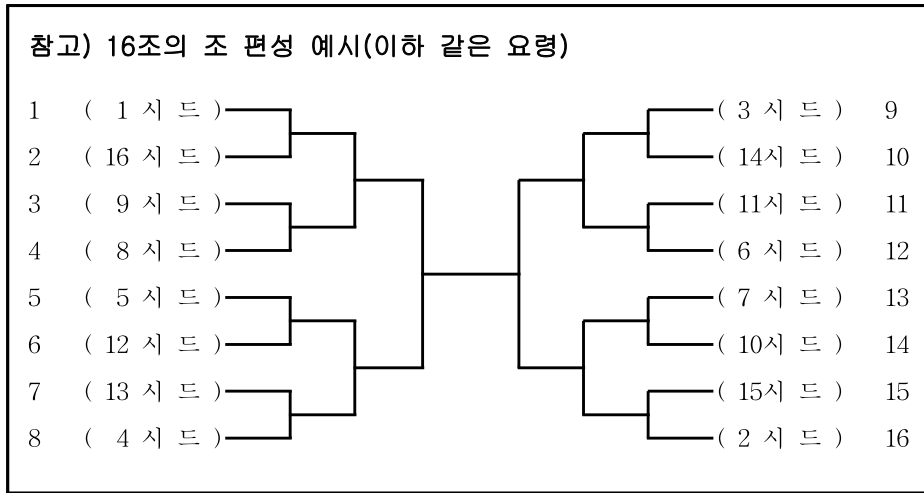
제12조(기권) 심판 규칙 제18조에 해당될 때에는 상대방 승으로 한다. 이때 패자가 얻은 포인트 또는 게임은 유효로 한다.

제13조(실격) 경기 규칙 제42조, 심판 규칙 제21조에 해당될 때에는 대회의 최초로 돌아가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실격된 순위는 공란이 된다.

제14조 (조편성) 대회의 조편성을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대회 주최, 주관 단체가 공정하게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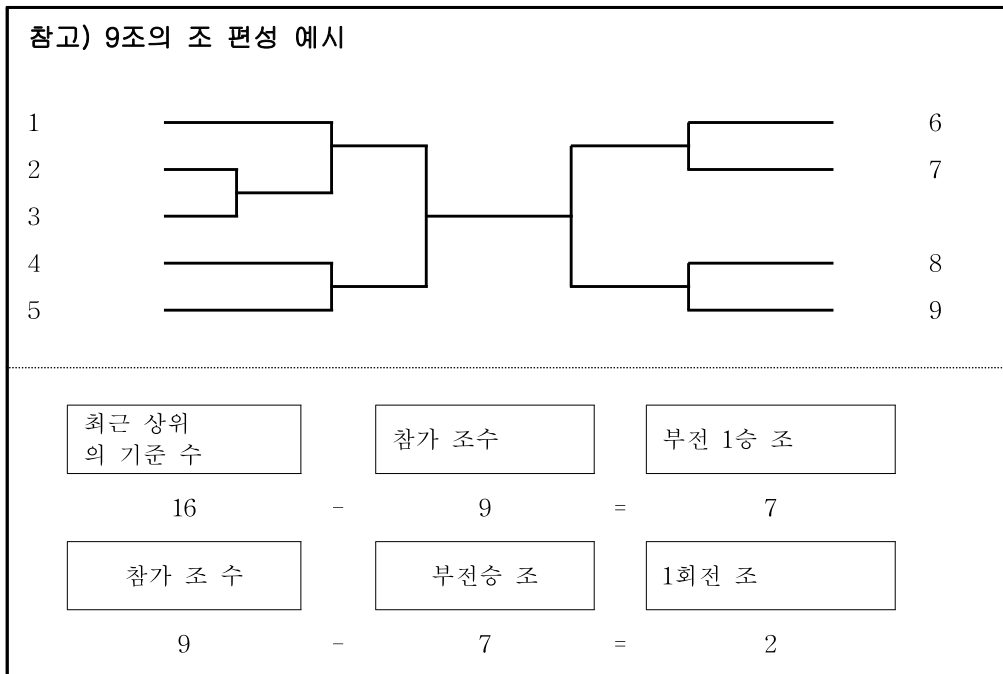
① 토너먼트 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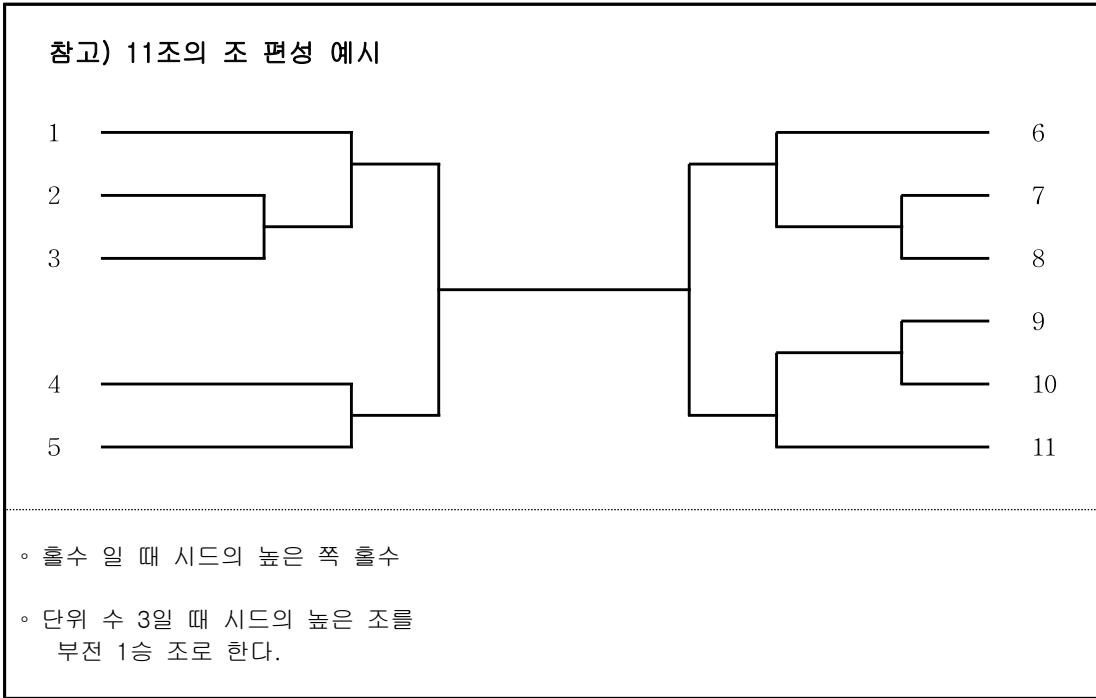
- 1) 참가수가 4, 8, 16, 32, 64, 128, 256, 512와 같이 2의 n승일 때 다음과 같이 조 편성한다.



- 2) 참가 수가 2의 n승(기준 수)이외 일 때는 최근 상위의 기준 수에서 참가 수를 감한 수를 부전 1승수로 하고 출장 수에서 부전 1승수를 감한 수를 제 1회전의 출전 수로 한다.

조 편성의 표는 출전 수를 2로 나누어 또 4등분, 8등분으로 하고 홀수일 경우에는 시드 순위 높은 쪽을 홀수로 조 편성하고 단위 수 3일 때는 시드 높은 쪽을 부전 1승 수로 한다.





② 리그전 방식

㉠ 참가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블록으로 나눈다.

㉡ 전체의 블록을 순번을 정하여 토너먼트와 같이 생각하여 시드를 정한다. 예를 들면 16조는 4블록으로 나눌 때 다음과 같은 시드 순으로 한다.

- 제 1블록, 1시드, 16시드, 9시드, 8시드.
- 제 2블록, 4시드, 13시드, 12시드, 5시드.
- 제 3블록, 3시드, 14시드, 11시드, 6시드.
- 제 4블록, 2시드, 15시드, 10시드, 7시드.

㉢ 리그전의 시합 순서

○ 3조 일 때 : 1-2, 2-3, 1-3

(제 2 시합은 패자와 남은 플레이어, 조, 팀과 대전하는 방법도 있다.)

○ 4조 일 때 : 1-2, 3-4, 1-3, 2-4, 2-3, 1-4

○ 5조 일 때 : 1-2, 3-4, 2-5, 1-3, 4-5, 2-3, 1-4, 3-5, 2-4, 1-5

○ 6조 일 때 : 1-2, 3-4, 5-6, 1-3, 2-5, 4-6, 3-5, 2-6, 1-4, 3-6,  
2-4, 1-5, 2-3, 4-5, 1-6

상기 시합 순서에 관해서 대회에 내용에 의해서 대회의 주최자가 결정한다.

※ 동일 블록에 같은 소속의 선수가 있을 경우 시합 순서에 관계없이 대전을 우선한다.

제15조(프로그램 등에 성적 기재) 대회 주최, 주관 단체는 프로그램 등에 대회 성적에 대하여 다음 요령으로 대전 스코어를 기재한다.

㉠ 개인전에 있어서는 게임 스코어를 기재한다.

㉡ 단체전에 있어서는 대전 스코어를 기재한다.

㉢ 기관(Retirement)일 때에는 해당 플레이어 또는 조 및 팀에 약자 'R'을 기입하여 유효

스코어를 기재한다.

㉞ 프로그램 작성 후 플레이어 또는 팀에 변경이 있을 경우 명칭을 정정한다.

제16조(참가 조건)

대회 참가자는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대회 요강에 정해진 참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7조(대회 사용구)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대회 사용구에 대하여 대회 요강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도핑 검사) 대회에 있어 도핑 검사를 실시할 경우는 대회 요강에 고지하게 하고 대회 참가자는 도핑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19조(의무)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대회 기간 중의 선수 및 관계자의 건강 관리에 충분히 배려하여 만일의 사태 응급 조치에 대응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20조(시상)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입상 및 시상에 대한 대회 요강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참가비 등) 대회 참가자는 참가비 등 비용 부담을 부가할 때 대회 요강에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자 회의)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 전 참가자 대표에 의한 협의 시에는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그 일시 목적 출석자 등에 대해 대회 요강에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경기 임원) 대회에 있어 경기 임원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회 경기 임원 편성 조직』을 참조하여 대회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편성한다.

제24조(심판단)

① 레프리, 엠파이어 등의 심판단은 대회 주최·주관단체가 편성한다.

② 레프리는 공정한 심판의 실행에 있어서 엠파이어를 지도하는 것과 경기 규칙 및 심판 규칙의 적정한 해석과 운영을 해야 한다.

③ 레프리가 복수 명이 있을 때 그 중 한사람이 레프리 장이된다.

④ 엠파이어는 한 매치에 주심 1명, 부심 1명을 원칙으로 하여 경기에 사용되고 코트 1면에 대한 원칙으로 하여 4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단, 부심을 두지 않을 때나 대회에 참가하는 플레이어가 심판을 할 때에는 이것을 고지하여 엠파이어의 총수를 줄일 수 있다.

## 제 4장 기 타

제25조(안전 관리)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원칙으로 플레이어, 임원, 그 외 관계자에 ID 카드를 발행하여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관리를 기해야 한다.

제26조(입장료) 대회의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대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스폰서) 대회 주최자는 대회에 스폰서를 붙일 수 있다. 스폰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회 주최·주관 단체의 결정에 의한다.

## 제 5장 부상자 교체 및 기권

제28조(부상자 교체) ① 해당 대회 참가신청 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참가신청 마감 전까지는 참가신청서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참가신청 마감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 대회 대표자회의에서 부상자 교체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상자 교체는 세부종목에 참가신청하지 않은 다른 선수로만 교체가 가능하며 기존의 세부종목에 참가신청한 선수간의 교체는 불가하다. 이때 부상자 교체는 진단서를 대표자회의에서 사무처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교체 여부는 경기부에서 판단한다.

제29조(기권) ① 관련 규정에 의한 기권 외에 해당 대회에서 선수가 신체상 이상이 생겨 신청한 세부종목을 출전할 수 없을 경우 진행석으로 선수 본인이 와서 기권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선수 본인이 신체상 심각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자가 기권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신체상 이상으로 경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경우 선수 본인 경기에서 양곤 인사를 할 경우 '×'가 아닌 '0' 점 처리된다.

부칙) 본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대회 경기 임원 편성 매뉴얼

소프트테니스 경기 대회를 원활히 하고 보다 안전 관리에 배려를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대회 주최 단체 및 대회 주관 단체로부터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관 단체(이하 대회 주최·주관 단체라 함)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경기 임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한다.

단, 대회는 국제대회, 국내대회 또는 대회의 규모, 레벨 등에 의해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대회 주최·주관 단체는 대회 상황을 고려하여 임원 편성 및 임원 인원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회 주최·주관 단체의 기본적 역할은 당해 대회의 기획·준비·경기 등의 전반적 통괄적 이어서 또 경기 임원의 주된 임무는 대회 중의 원활한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양자는 표리일체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 단독 대회는 조직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통상 예이다.

## 경기 임원의 기본적 직무 분담과 직무 내용

- 대회 회장 1명 \*\*\*\*\* 대회를 통괄한다.
- 대회부회장 약간명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부재 시에는 대행한다.
- 대회 위원장 1명 \*\*\*\*\* 대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대회 운영 전반에 권한과 책임을 진다.

◦ 총무부 \*\*\*\*\* (부장 1명, 부원 약간명, 필요에 따라 부부장을 둔다)

대회운영에 있어 사무처리 타부와의 조정, 회계 등을 소관한다.

### 1. 서무

- 1-1 대회 조직위원회의 조편성
- 1-2 임원, 보조원 위촉
- 1-3 대회 일정의 책정

- 1-4 관계 단체와의 절충 신청
- 1-5 프로그램의 작성
- 1-6 경기장 등 시설의 교섭 설정
- 1-7 관객 동원
- 1-8 입장료, 입장권
- 1-9 임원 복장 등
- 1-10 스폰서의 확보와 절충

## 2. 회계

- 2-1 예산·결산
- 2-2 회계 처리
- 2-3 회계 보고

## 3. 재무

- 3-1 재정 계획
- 3-2 자금 확보

## 4. 식전

- 4-1 개회식·폐회식 계획 운영
- 4-2 리셉션 등 계획 운영

## 5. 접대

- 5-1 식사
- 5-2 수송
- 5-3 중식의 수배
- 5-4 내빈 수부 접대
- 5-5 ID 카드 발급

## 6. 의무

- 6-1 구호
- 6-2 도핑 검사

## - 경 기 부 -

(부장 1명, 부원 약간명, 필요에 따라 부부장을 둔다) : 대회의 경기 운영을 소관한다.

## 1. 경기

- 1-1 대회 요강의 작성 배부
- 1-2 참가 신청 수부
- 1-3 대회 조 편성
- 1-4 경기 일정, 스케줄 작성, 관리
- 1-5 코트 배정 작성
- 1-6 참가자 접수
- 1-7 참가 자격 참가 조건의 확인
- 1-8 기권의 확인
- 1-9 대회 사용구의 결정·확인
- 1-10 심판단과의 연대·조정
- 1-11 보조원의 확보 작업·관리
- 1-12 선수 리스트 작성·관리

## 2. 시설



- 2-1 경기장 관리
- 2-2 경기장 간판, 장식 등 설치
- 2-3 코트 관리
- 2-4 스코아 보드의 설치

3. 진행

- 3-1 경기자 호명
- 3-2 오-다 접수(단체전)
- 3-3 채점표의 준비
- 3-4 기록의 작성, 관리
- 3-5 기록의 전달
- 3-6 대회 진행 상황 파악

- 홍 보 부 -

(부장 1명 부원 약간명, 필요에 따라 부부장을 둔다)

1. 일반 홍보

- 1-1 매스컴 관계, 단체 등의 홍보
- 1-2 TV 방송 계획·집행
- 1-3 포스트 등의 작성

2. 대회 보도

- 2-1 대회 결과 매스컴 등에 보고
- 2-2 보도 관계자의 접대
- 2-3 내부 보도

- 심 판 단 -

(레프리장 1명, 레프리 5명 이내, 엄파이어 필요인 수)

: 대회에 있어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 심판 규칙에 의한 심판단 편성을 한다.

1. 심판 준비

- 1-1 심판 배정 계획·작성
- 1-2 볼 규격 관리
- 1-3 스코아 보드의 개시 및 관리

2. 심판

- 2-1 선수 유도
- 2-2 매치의 심판
- 2-3 채점표의 기입
- 2-4 채점표의 제출
- 2-5 심판에 관한 이의·제소의 대응

-기 타-

대회 협력, 지원자에 대한 고문, 자문,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대회운영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인력환경에 따라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